#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79

발의연월일: 2025. 5. 22.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박충권

우재준 • 배준영 • 최수진

박준태 · 김은혜 · 유용원

이상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이 기금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도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해당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

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 1조의2 및 제24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 2.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
-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 2.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사업
- 3.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 4.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 촉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의2(기금의 출연금 등에 대한 조세 특례)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 제24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1.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 2.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⑨ 제8항에 따른 사용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8조(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
	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
	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
	라 한다)을 설치한다.
<u>&lt;신 설&gt;</u>	제1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u>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
	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징
	<u>수액의 100분의 50</u>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u>수익금</u>
<u>&lt;신 설&gt;</u>	제2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u>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u>
	1.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의 작성
	등 연구개발사업
	2. 편의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u>기술지원사업</u>
	3.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
	<u>보사업</u>
	4.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

<신 <u>설></u>

<신 설>

제24조(이행강제금) ① ~ ⑦ (생략)

<신 설>

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설치 촉진 등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제2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 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되, 그 운용·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금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기금의 출연금 등에 대한 조세 특례)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 ① ~ ⑦ (현 행과 같음)

8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징 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 가 사용하되,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 보사업 2.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u><신</u>설> ⑨ 제8항에 따른 사용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⑩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신 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 · 시행 하여야 한다.